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2년 제2호

2012. 12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연구원

이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을 국가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 목 차 ▶▶

##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I. OECD - Taxing Wages 2010~2011 .....	3
1. 서언 .....	3
2. 2011년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 주요 현황 .....	4
가. 2011년 현재 조세격차 현황 .....	4
나. 2011년 현재 조세격차의 구성요소 비중 현황 .....	6
다. 2011년 현재 근로자의 개인 평균세율 현황 .....	7
라. 2011년 현재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현황 .....	8
3. 소득세율 및 사회보장기여금률 등의 추세적 특징 .....	10
가. 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계층의 수 .....	10
나. 최고 소득세율 .....	10
다.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임계점 .....	11
라. 평균임금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	11
마. 최저 소득세율 .....	11
바. 소득세 면세점 .....	12
사.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	12
아. 사회보장기여금제도가 개인 한계세율에 미치는 영향 .....	13
자. 최고 개인 한계세율과 최고 소득세율 간의 격차 .....	14

<b>II. EU 회원국의 금융상품 및 금융 분야에서의 보수와 이익에 대한</b>	
<b>과세와 관련한 조세보고서</b> .....	<b>15</b>
1. 간접세 -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es) .....	16
2. 직접세 - 선별된 파생상품(Selected Derivatives) .....	19
가. 개관 .....	19
나. 회계처리의 역할 .....	20
3.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을 위한 회계처리 .....	21
4. 금융상품에 대한 특별한 회계처리 규칙: 금융상품에 대한 세무적 처리의 잠재적인 효과 .....	22
5. 주식스왑(Equity Swaps) 상품과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 .....	23
6.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에 대한 세무적 처리 .....	24
7. 파생상품에 대한 세무적 처리 .....	25

<b>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b>
---------------------------

<b>I. 미국/캐나다</b> .....	<b>31</b>
1. 미국 .....	31
가. 미국과 영국 간의 FATCA 협약 체결 .....	31
나. 해외 자선단체에 대한 성실법인 지정 방법 변경 .....	32
다. 신시장 세액공제 관련 세부규칙 제정 .....	33
<b>II. 유럽</b> .....	<b>36</b>
1. 그리스 긴축재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 .....	36
2. 덴마크 2012 개정세법 .....	37

가. 2012 조세개혁 .....	37
나.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환급규정 개정 .....	39
3. 스페인 개정세법 .....	40
가.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 등 법인세 개정 .....	40
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상 .....	42
다. 부가가치세율 인상 및 표준세율 적용 대상 용역거래의 확대 .....	42
4. 네덜란드 2013년 예산안 및 세법 개정 .....	42
가. 법인세 .....	42
나. 부가가치세 .....	43
다. 부동산취득세(Real Estate Transfer Tax) .....	43
라. 비상인건비추가부담금(Wage Tax Crisis Levy) 도입 .....	44
마. 네덜란드의 2013년 세법 개정(안) .....	44
5. 러시아 세법 개정 .....	45
가. 세법상 외국인에 대한 채권이자수익의 원천징수면제 .....	45
나. 러시아 세무당국으로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신설 .....	46
다. 은행거래정지에 대한 요청규정 신설 .....	47
6. 아일랜드 지방 재산세 도입 .....	47
7. 영국의 세금회피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	48
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전략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원 확대 선언 .....	48
나. HRMC에 대한 지원 확대의 배경인 스타벅스 조세회피 사건 .....	49
8. 핀란드 자산이전세 변경 .....	50
9. 프랑스 2012 수정 예산안 .....	51
가. 금융거래세 .....	52
나. 부가가치세 .....	52
다. 법인세 .....	53
라. 상속세·증여세 .....	54
마. 금융소득 누진소득세율 적용 계획 재검토 .....	54

10. EU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축소 .....	55
11.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 .....	57
가. 현행 GSP 제도 및 개정 배경 .....	57
나. 개정 내용 .....	58
12.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 .....	60
가. 부동산 보유기업 주식의 양도에 부수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	60
나. 재개발을 위해 취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	60
다. 영리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강화의 위법성 .....	61
<b>III. 아시아/오세아니아 .....</b>	<b>62</b>
1. 대만 주식매매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	62
가. 법인 납세자 .....	63
나. 개인 납세자 .....	64
2. 일본 개정세법 .....	65
가. 아시아 거점화 촉진세제 신설 .....	65
나. 소비세율 개정 .....	67
다. 일본의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과세 특례 시행 .....	68
3. 중국의 배당소득세 차등과세 규정 .....	70
4. 홍콩의 「인지세법」 개정안 .....	71
5. 뉴질랜드의 2012년 세율 및 신고 등에 대한 세법 .....	72
가. 소득세율 동결 .....	72
나. 신고절차 간소화 .....	72
다. 수익분배계획에 대한 과세 .....	73
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에 대한 과세 .....	73
마. 키위세이버 최소 납입금 기준 인상 .....	74
바. 은행 그룹의 자본 기준 강화 .....	74

# 표 목 차 ▶▶

## 제 1 부

<표 I-1> 주요국의 조세격차 현황(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	5
<표 I-2>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	6
<표 I-3> 주요국 근로자의 개인 평균세율 현황(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	7
<표 I-4> 주요국의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현황(평균임금 기준) .....	9

## 제 2 부

<표 II-1> 그리스의 소득세 .....	36
<표 II-2> 거래 형태에 따른 과세표준의 변화 .....	51
<표 II-3> 현행 프랑스 누진소득세율(2012년) .....	55
<표 III-1> 일본 소비세율 인상 계획 .....	68
<표 III-2> 지구 온난화 대책세 단계적 시행에 따른 석유석탄세 세율 .....	69
<표 III-3> 중국의 상장주식 개인 배당소득세 .....	71
<표 III-4> 홍콩 특별인지세 세율 인상안 .....	71
<표 III-5> 뉴질랜드 2012-13년 소득세율 .....	72





# 제1부 주요 이슈별 조세동향





## I. OECD - Taxing Wages 2010~2011

### 1. 서 언

- OECD는 2012년 7월 18일에 “임금소득 과세 보고서 2010~2011(Taxing Wages 2010~2011)”을 발간하였으며, OECD 34개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에 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음
  - 임금소득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근로자<sup>1)</sup>에게 부과되는 소득세(Personal Income Tax)와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 SSC),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Payroll Taxes)<sup>2)</sup>, 그밖에 가계현금급여(Cash Family Benefits) 등이 있음
  - 임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의 전체 조세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 본 보고서를 통해 임금소득 수준별, 가구 형태별로 국가 간 정량적인 비교(Quantitative Cross-country Comparisons)를 가능하게 함
  - 특히 2011년 현재 근로자의 세부담(Tax Burden) 추정치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조세격차(Tax Wedge)를 사용함
  - 조세격차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을 측정한 지표임

1) 성인 풀타임 근로자(adult full-time worker)가 그 대상이며, 육체노동을 하는 생산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육체노동 근로자도 포함함

2)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호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의 통계에 포함됨

**<참고> 조세격차**

조세격차는 고용주의 노동사용비용과 근로자의 세후소득 간의 차이를 노동사용비용으로 나눈 비율값으로서 소득세 이외에 사회보장기여금, 가계현금급여 등도 반영된 값임

$$Tax\ Wedge(\%) = \frac{T + SSC_{ee} - FCB + PT + SSC_{er}}{In + PT + SSC_{er}} \times 100$$

여기서, T는 소득세, SSCer, SSCee는 각각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기여금, FCB는 가계현금급여, PT는 지불급여세, In은 근로소득

- 또한,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 중 개인 평균세율(Average Personal Tax Rates)과 개인 한계세율(Marginal Personal Tax Rates)을 도출하여 이용하기도 함
  - 개인 평균세율이란 총임금소득(Gross Wage Earnings)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금액<sup>3)</sup>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개인 한계세율은 총임금소득 증가분 대비 근로자가 부담하는 조세금액 증가분 비율을 말함
  - 개인 평균세율은 노동시장에의 참여 유인에 영향을 주며, 개인 한계세율은 근로 의욕, 교육훈련, 이직 등의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2. 2011년 OECD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 주요 현황**

**가. 2011년 현재 조세격차 현황**

- 2011년 현재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격차는 35.2%이며, 최대 55.5%(벨기에)에서 최소 7.0%(칠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분포함
  - 조세격차가 50%를 상회한 국가는 벨기에, 독일, 헝가리, 프랑스이며, 20%를 하회한 국가는 칠레, 뉴질랜드, 멕시코, 이스라엘임

3) 개인소득세 + 근로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 - 가계현금급여

&lt;표 1-1&gt; 주요국의 조세격차 현황(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단위: %)

국가	Tax Wedge 2011	전년 대비 증가분			
		Tax Wedge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sup>1)</sup>
벨기에	55.5	0.16	0.04	-0.01	0.13
독일	49.8	0.59	0.04	0.28	0.28
헝가리	49.4	2.77	2.39	0.39	0.00
프랑스	49.4	0.03	0.04	-0.01	0.00
이탈리아	47.6	0.44	0.44	0.00	0.00
스웨덴	42.8	0.04	0.05	0.00	0.00
체코	42.5	0.38	0.38	0.00	0.00
스페인	39.9	0.14	0.14	0.00	0.00
네덜란드	37.8	-0.34	-0.14	0.01	-0.21
노르웨이	37.5	0.25	0.03	-0.02	0.24
룩셈부르크	36.0	1.65	0.29	0.72	0.64
영국	32.5	-0.08	-0.56	0.25	0.23
일본	30.8	0.58	-0.09	0.33	0.34
미국	29.5	-0.93	0.93	-1.82	-0.04
아일랜드	26.8	0.95	3.82	-2.87	0.00
한국	20.3	0.20	-0.22	0.23	0.19
이스라엘	19.8	0.41	0.32	0.05	0.03
멕시코	16.2	0.62	0.59	0.00	0.04
뉴질랜드	15.9	-1.12	-1.12	0.00	0.00
칠레	7.0	0.00	0.00	0.00	0.00

주: 1) 지불급여세(Payroll Taxes)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시킴  
 자료: OECD, 『Taxing Wages 2010-2011』, p. 14

- 전년 대비 2011년에 조세격차는 전반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증가한 국가는 26개국, 감소한 국가는 6개국임
  - 최대 증가폭을 보인 국가는 헝가리(2.77%)이며, 최대 감소폭을 보인 국가는 뉴질랜드(-1.12%)임
- 조세격차가 확대된 주요 원인은 소득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OECD 회원국 중 18개국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아일랜드(3.82%)와 헝가리(2.39%)에서 그 증가폭이 컸음
  - 반면 조세격차 확대의 원인이 근로자와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의 증가에 기인한 국가는 독일,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노르웨이가 있음

### 나. 2011년 현재 조세격차의 구성요소 비중 현황

- 조세격차를 설명하는 구성요소에는 개인소득세,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지불급여세 포함)이 있으며, 국가별로 그 구성비중에 차이를 보임
- 2011년 현재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OECD 회원국의 노동사용비용 대비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28%(독일)에서 최소 0%(칠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한국(3.9%)과 멕시코(4.4%)는 낮은 소득세 비중을 나타냄
  - 반면 호주, 벨기에, 아이슬란드에서는 20% 이상의 높은 소득세 비중을 나타냄
-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비중 역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임
  -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0%이며, 독일은 17.4%, 슬로베니아는 19%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프랑스에서 29.7%로 가장 높았으며, 그밖에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헝가리, 이탈리아 등에서도 20%가 넘는 높은 비중을 보임
  - 근로자와 고용주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합계가 노동사용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6개국임

<표 1-2> 주요국의 조세격차 구성요소 비중 현황 (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단위: %, USD)

국가	Tax Wedge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sup>1)</sup>	노동사용비용 <sup>2)</sup>
독일	49.8	15.9	17.4	16.5	65,788
벨기에	55.5	21.7	10.8	23.1	64,169
네덜란드	37.8	14.5	14.0	9.2	60,765
오스트리아	48.4	11.9	14.0	22.6	59,671
프랑스	49.4	10.0	9.6	29.7	58,862
영국	32.5	14.1	8.5	9.9	57,711
스웨덴	42.8	13.6	5.3	23.9	55,351
미국	29.5	15.7	5.2	8.7	51,255
일본	30.8	6.6	11.7	12.4	51,089
덴마크	38.4	28.0	10.7	0.0	48,994
한국	20.3	3.9	7.3	9.2	48,370

&lt;표 1-2&gt;의 계속

(단위: %, USD)

국가	Tax Wedge	개인소득세	근로자 SSC	고용주 SSC <sup>1)</sup>	노동사용비용 <sup>2)</sup>
이탈리아	47.6	16.1	7.2	24.3	48,025
호주	26.7	21.0	0.0	5.6	47,530
아이슬란드	34.0	25.6	0.5	8.0	44,011
뉴질랜드	15.9	15.9	0.0	0.0	32,426
슬로베니아	42.6	9.7	19.0	13.9	32,018
체코	42.5	8.9	8.2	25.4	27,963
헝가리	49.4	13.6	13.6	22.2	25,960
칠레	7.0	0.0	7.0	0.0	14,530
멕시코	16.2	4.4	1.2	10.5	12,337

주: 1) 지불급여세(Payroll Taxes)가 포함됨

2) 구매력 기준 달러(USD)표시 금액임

자료: OECD, 『Taxing Wages 2010-2011』, p. 15

#### 다. 2011년 현재 근로자의 개인 평균세율 현황

- 2011년 현재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OECD 회원국의 개인 평균세율은 25%이며, 최고 42.4%(덴마크)에서부터 최저 6.3%(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함
- 덴마크와 독일은 35%가 넘는 높은 개인 평균세율을 기록하였으며, 반면 한국과 칠레는 15%를 하회하는 낮은 개인 평균세율을 기록함

&lt;표 1-3&gt; 주요국 근로자의 개인 평균세율 현황(독신가구, 평균임금 기준)

(단위: %, USD)

국가	근로자 조세총액	개인소득세	근로자 부담 SSC	총임금소득 <sup>1)</sup>
네덜란드	31.4	16.0	15.4	55,165
독일	39.9	19.0	20.9	54,949
영국	25.1	15.6	9.5	52,013
벨기에	42.2	28.2	14.0	49,351
덴마크	38.7	28.0	10.7	48,994
미국	22.8	17.2	5.7	46,800
호주	22.3	22.3	0.0	44,853
일본	21.0	7.6	13.4	44,738
한국	12.3	4.3	8.1	43,943
프랑스	28.0	14.3	13.7	41,361
아이슬란드	28.3	27.8	0.5	40,507

<표 1-3>의 계속

(단위: %, USD)

국가	근로자 조세총액	개인소득세	근로자부담 SSC	총임금소득 <sup>1)</sup>
이탈리아	30.8	21.3	9.5	36,361
뉴질랜드	15.9	15.9	0.0	32,426
이스라엘	16.1	8.4	7.7	32,098
슬로베니아	33.4	11.3	22.1	27,578
체코	23.0	12.0	11.0	20,868
폴란드	24.6	6.8	17.8	20,567
헝가리	35.0	17.5	17.5	20,202
칠레	7.0	0.0	7.0	14,530
멕시코	6.3	4.9	1.4	11,035

주: 1) 구매력 기준 달러(USD)표시 금액임  
 자료: OECD, 『Taxing Wages 2010-2011』, p. 18

- OECD 34개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소득세 부분이 사회보장기여금 부분보다 개인 평균세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징수되지 않으며, 아이슬란드와 멕시코에서도 상대적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낮음
  - 반면 일본, 한국, 폴란드, 칠레 등 6개국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소득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
  - 또한 체코,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이스라엘 등 10개국에서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의 차이가 3% 이내에 불과함

**라. 2011년 현재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현황**

- 2011년 현재 OECD 회원국의 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2자녀 외벌이가구가 독신가구 형태보다 조세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세제지원이나 현금급여를 통해 자녀를 둔 가구에 재정적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
  - 특히 체코,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헝가리, 뉴질랜드 등에서는 2자녀 외벌이가구가 독신가구보다 15% 이상 조세격차가 낮았음

- 반면 칠레와 멕시코에서는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터키도 조세격차 차이가 2%를 넘지 않았음
- 2010년과 2011년 사이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 변화율 차이를 살펴보면 국가마다 변화율 차이의 크기와 방향이 조금씩 달랐음
  -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터키에서는 2자녀 외벌이가구 근로자의 조세격차 증가폭이 독신가구 근로자보다 낮았음
  - 멕시코, 스위스, 영국에서는 조세제도의 개편에도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 변화가 없었음

&lt;표 1-4&gt; 주요국의 가구 형태별 조세격차 비교 현황(평균임금 기준)

(단위: %)

국가	2자녀 외벌이가구 Tax Wedge	독신가구 Tax Wedge	전년 대비 Tax Wedge 변화율		
			2자녀 외벌이가구	독신가구	가구 간 차이
프랑스	42.3	49.4	0.1	0.0	-0.1
벨기에	40.3	55.5	0.4	0.2	-0.3
이탈리아	38.6	47.6	0.8	0.4	-0.4
스웨덴	37.3	42.8	0.2	0.0	-0.1
터키	36.3	37.7	-0.2	-0.2	0.1
독일	34.0	49.8	1.1	0.6	-0.5
헝가리	32.8	49.4	-3.9	2.8	6.7
네덜란드	30.7	37.8	-0.2	-0.3	-0.2
폴란드	28.4	34.3	0.0	0.1	0.1
영국	26.4	32.5	-0.1	-0.1	0.0
일본	23.0	30.8	1.0	0.6	-0.4
체코	21.7	42.5	0.6	0.4	-0.3
미국	18.2	29.5	-0.1	-0.9	-0.9
한국	17.9	20.3	0.1	0.2	0.1
멕시코	16.2	16.2	0.6	0.6	0.0
이스라엘	16.0	19.8	0.1	0.4	0.3
룩셈부르크	13.4	36.0	1.8	1.7	-0.1
스위스	8.4	21.0	0.2	0.3	0.0
칠레	0.7	0.0	0.7	0.0	-0.7
뉴질랜드	-1.2	15.9	-0.3	-1.1	-0.8

자료: OECD, 『Taxing Wages 2010-2011』, p. 20

### 3. 소득세율 및 사회보장기여금률 등의 추세적 특징

-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개인 평균세율과 개인 한계세율을 결정짓는 요소인 소득세율(Statutory Personal Income Tax Rates) 및 사회보장기여금률(Statutory SSC Rates), 이들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계층 등에 대한 추이를 분석함

#### 가. 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계층의 수

- 1980년대 OECD 회원국에서 소득세율 적용 과세표준계층(Tax Brackets)의 수는 평균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였으며, 1990년대 및 2000년대에는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음
-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과세표준계층이 도입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고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경우가 많았음
  - 과세표준계층 수의 변화는 그 자체가 정책 목표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증감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음

#### 나. 최고 소득세율

- 지난 30년간 OECD 회원국에서 평균적으로 부가세(Surtaxes) 및 지방소득세(Sub-central Taxes) 포함 최고 소득세율(Top Statutory Personal Income Tax Rates)이 인하되는 경향을 보여 왔음
  - 그러나 최근의 경향과는 다르게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에서는 2010년에 최고 소득세율을 인상한 바 있음
- 지방소득세가 있는 OECD 13개국 중에서 과거 10년간 10개국에서 최고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경향을 보였음
  - 이러한 소득세율 인하경향은 주로 최고 중앙정부 소득세율(Top Central Tax Rates) 인하에 기인한 것이며, 핀란드나 스페인의 지방정부에서는 오히려 최고 지방 소득세율을 인상한 바 있었음

- 일반적으로 중앙정부 소득세율이 지방 소득세율보다 비중이 큼

#### 다.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임계점

- 2000년과 2010년 사이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임계점(Threshold) 수준은 과세표준계층 수와 최고 소득세율 수준에 따라 변화하였음
  - 과세표준계층 수의 감소와 최고 소득세율 수준의 인하가 일어나면, 일반적으로 최고 소득세율 적용 소득임계점이 인하되는 경향을 보임
  - 반대로 과세표준계층 수의 증가와 최고 소득세율 수준의 인상이 일어난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최고 소득세율 적용 소득임계점은 인상되는 경향을 보임
- OECD 회원국 전반적으로 최고 소득세율의 인하, 최고세율 적용 소득임계점의 인하, 과세표준계층 수의 감소가 동반하여 일어나는 추세가 다수임
  - 특히 벨기에, 멕시코, 슬로베니아, 터키, 체코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음

#### 라. 평균임금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 지난 10년간 평균임금을 받는 독신근로자에게 적용된 소득세율은 OECD 회원국 중 23개국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 평균임금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대체로 개인의 평균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 즉, 개인의 평균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수록 평균임금 수준에 부과되는 소득세율도 낮아지며, 개인의 평균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질수록 평균임금 수준에 부과되는 소득세율도 높아짐

#### 마. 최저 소득세율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최저 소득세율(Bottom Statutory Personal Income Tax Rates)에 대해서는 뚜렷한 경향은 없었음

- 최저 소득세율이 인상된 국가도, 인하된 국가도 있었으며 그 폭도 다양했음
-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최저 소득세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바, 이때는 최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 범위에도 변화가 수반되었음
- 여러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였던바, 이를 주로 기본공제나 근로관련공제의 확대를 통해 달성하려 하였음

#### 바. 소득세 면세점

- 과거 10년 동안 OECD 회원국에서 소득세 면세점<sup>4)</sup>은 명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음
  - 한국과 멕시코 등에서는 면세점이 낮아졌고, 여타 국가들에서는 면세점이 그대로 유지되었거나 높아졌음
- 지방 소득세가 있는 국가들에서는 중앙정부 소득세 면세점이 지방 소득세 면세점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중앙정부(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성 세액공제가 발생한다면 지방(중앙정부)소득세 납부액에서 차감되므로, (전체) 소득세 임계점은 중앙정부 소득세 임계점과 지방 소득세 임계점의 사이에 존재하게 될 것임

#### 사.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 OECD 회원국 중 8개국에서 2010년 현재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Sur-taxes)제도를 두고 있었음
  - 호주,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터키가 이에 해당함
- 부가세(Sur-taxes)는 조세제도에 있어서 복잡성(Complexity)을 증가시키고 투명성(Transparency)을 감소시키며, 과세방식에 따라 개인 소득세의 누진성(Progressivity)에도 영향을 미침

---

4) 납세자가 소득세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소득 수준

- 부가세(Surtaxes)가 이미 누진적인 기본 소득세의 일정률을 곱해서 산정된다면 누진성을 증가시키고, 비례세(Proportional Tax) 형태로 산정된다면 누진성을 감소시킴

#### 아. 사회보장기여금제도가 개인 한계세율에 미치는 영향

- 근로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제도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소득의 일정수준을 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납부를 면제하기도 하고 소득이 일정수준을 상회할 경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를 면제하기도 하는 등 국가마다 그 부과 방식은 다름
- 사회보장기여금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거나(20개국)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2개국), 대부분 국가에서 한계소득세율을 인하하는 영향을 줌
-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있어서 사회보장기여금률은 개인 한계세율(Marginal Personal Tax Rates)을 증가시켰음
  - 개인 한계세율은 한계 소득세율과 한계 사회보장기여금률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바, 한계 소득세율의 감소분보다 한계 사회보장기여금률의 증가분이 일반적으로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2010년 현재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일본, 네덜란드에서는 최고 개인 한계세율이 최고 소득세율보다 낮았음
    - 이는 일정수준의 소득부터 사회보장기여금에 상한선이 있거나 고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기여금 소득공제 혜택이 컸기 때문임
  - 또한, 2010년 현재 캐나다, 칠레, 독일, 그리스, 스페인, 스웨덴, 터키에서는 최고 개인 한계세율과 최고 소득세율이 같았음

#### 자. 최고 개인 한계세율과 최고 소득세율 간의 격차

- 2000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적으로 최고 개인 한계세율과 최고 소득세율 간의 평균 격차는 2.9%에서 3.7%로 증가하였음
  - 최고 소득세율의 인하와 더불어 최고 개인 한계세율도 감소하였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자 부담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증가하였으므로 개인 한계세율의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 또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최고 개인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임계점이 하향됨으로써 최고 개인 한계세율 인하에 따른 고소득층의 세부담 영향을 최소화함

## II. EU 회원국의 금융상품 및 금융 분야에서의 보수와 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조세보고서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회원국의 금융상품 및 금융 분야에서의 보수와 이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조세보고서(Taxation Papers) 『Review of Current Practice of Financial Instruments, Profits, and Remuneration of Financial Sector』를 발행함
- 이 보고서의 목적은 일부 선택된 증권들(주식스왑, 금융 선물, 주식에 대한 콜 옵션 등)의 세무적인 처리에 대해 EU 회원국 및 선택된 제3국 간의 차이 및 과세방식을 조사한 것임
  - 한편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회사들과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무적인 처리가 다른 것에 대하여 일부 다루고 있음
  - 이 보고서는 보통의 국가에서 세무적인 처리에 대한 주요 경향에 대하여 보편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적인 사항의 조사 결과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보고서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추가 질문이나 자세한 요점 정리는 되어 있지 않고 회계적인 처리에 대한 분석도 거의 하고 있지 않음을 명시함
  - 이러한 한계는 EU에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사를 할 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으며 자세한 부분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임
  - 보고서는 조사에 포함된 파생상품에 대해서 세무적인 측면에서만 분석과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1. 간접세 -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es)

- EU의 9개 국가(벨기에, 키프로스,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영국)와 제3국의 2개 국가(싱가포르, 스위스)가 증권거래세를 적용함
  - 중국은 전형적인 증권거래세에 비교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세금(영업세)을 적용하지만, 이를 증권거래세로 볼 수는 없음
- 일부 국가들(벨기에, 키프로스,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만이 Organised Market에서 거래된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적용함
  -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경우 증권거래세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싱가포르, 프랑스), 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가(폴란드), 적격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에 대해 비과세하는 국가(핀란드)도 있음
  - 루마니아에서는 정규시장과 대체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경우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정규시장 외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모니터링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 키프로스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증권거래세가 있음
    - 첫 번째 유형은 증권거래소에서 발생했거나 공고된 거래에만 적용됨
    - 두 번째 유형(인지세)은 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들을 비과세함
-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인 ‘증권’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파생증권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국가에서 증권거래세는 지분증권에 주로 적용됨
  - 채권(벨기에, 프랑스) 또는 전환사채(영국)와 같이 지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채무증권에 적용되는 국가도 있음
  - 또한, 파생상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도 있음
- 대부분 국가는 증권 이전 시 증권거래세를 적용함

- 벨기에는 당사자들 간 거래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과세함으로써 유통 시장 거래에 대해 2회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 또한, 벨기에는 투자회사가 보유한 지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과세함
-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taxable basis**)은 국가마다 증권의 종류나 거래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판매가격 또는 기타 대가인 국가(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취득가격·과세 대상 증권에 대한 보상(**remuneration**)인 국가(스위스)가 있음
  - 또한 과세표준이 계약가격인 국가(키프로스), 증권의 시가인 국가(폴란드), 이전가격과 금융상품의 시가 중 높은 금액인 국가(아일랜드)도 있음
- 증권거래세를 운영하는 모든 국가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세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 증권의 유형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벨기에, 아일랜드)가 있으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른 국가(루마니아)가 있음
  - 스위스는 국내증권에는 0.15%, 국외증권에는 0.3%를 적용함
  - 또한 과세표준의 금액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다른 국가(키프로스),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국가(프랑스)도 있음
  - 한편, 증권거래세의 상한이 있는 국가(벨기에, 키프로스)와 상한이 없는 국가(아일랜드, 영국, 스위스)도 있음
- 증권거래세의 지역적 범위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증권의 국적(**Nationality**)과 결부하여 매수자 그리고(또는) 매도자의 국적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는 매수자 그리고(또는) 매도자가 핀란드 거주자거나 금융기관의 핀란드 지점인 경우에 특정 핀란드 증권만 증권거래세가 부과됨
  -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자산이 있는 경우, 아일랜드에서 거래된 경우 또는 해당 거래가 아일랜드에서 완료된 것과 관련된 경우에 증권거래세가 적용될 수 있음

- 프랑스는 비상장 프랑스 회사의 주식이나 프랑스 소재 부동산을 주로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국내 또는 해외에서 거래할 때 증권거래세가 적용됨
- 영국도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가 적용됨
- 스위스와 벨기에는 주로 국내 중개회사의 개입을 판단요소로 삼음
- 일부 국가는 비과세 당사자(exempt parties)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음
  - 벨기에는 비거주자와 벨기에 금융권(은행, 보험회사, 연금단체,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음
    - 따라서 벨기에 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벨기에 거주자만 증권거래세를 과세함
  - 영국은 승인된 중개회사, 스위스는 외국 은행과 증권 딜러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음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
  - 납세의무자는 매수자(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싱가포르) 또는 매도자(키프로스, 그리스)로 구분할 수 있음
  -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중개회사, 증권 딜러, 증권 거래소(벨기에, 스위스, 그리스, 루마니아)임
    -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직접 납부해야 하는 국가(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도 있음
- 자본 이동 시 간접세에 관한 EU 법령에 따라 유통시장의 거래에 대해서만 증권 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으며, 발행시장의 거래에서는 세금이 금지됨
  - 이러한 관점에서 벨기에와 영국은 증권거래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야 했음
-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일부 국가도 있음
  - 이탈리아는 2008년 12월 31일 이후 서명된 계약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함
  - 그리스는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취득한 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됨

## 2. 직접세 - 선별된 파생상품(Selected Derivatives)

### 가. 개관

-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 중 주식스왑(equity swap), 선물(financial future), 주식 콜 옵션(call options on stocks)의 세 종류에 국한하여 소개함
  - 다만, 이들 상품들은 금융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대부분을 대표하는 것은 아님
    - 금융기관들은 주식스왑에 비해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과 통화스왑(currency rate swap)을 더 자주 사용함
- 대부분 국가<sup>5)</sup>에서 파생상품에 관한 일반적 과세규정이나 특수한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일반적인 법인세 규정을 적용함
  - 기존 법인세 규정에 파생상품과 관련된 몇 개의 특수한 과세규정이나 정의 규정을 추가한 국가(그리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도 있음
  - 반면, 영국과 미국은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그 규정은 매우 상세하고 복잡함
  - 중국은 현재, 스왑에 대한 과세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며, 외국법인이 선물이나 주식 콜옵션을 거래하는 것은 금지됨
- 동일한 유형의 파생상품도 상장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국가(프랑스, 그리스)가 있으며, 헤징이나 투기적 성격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국가(벨기에,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도 있음
  - 특히, 헤징이나 투기적 성격 유무는 회계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대

5)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싱가포르, 스위스 총 21개국

부분 국가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회계처리에 근거하거나 적어도 회계 처리의 영향을 받음

#### 나. 회계처리의 역할

- 대부분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페인)의 세법은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처리를 결정하는 시작점은 회계처리임
  -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는 본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보고체계와 기본적인 회계개념과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처리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함
- EU 국가들에서 금융상품에 적용시키는 과세규정은 조화되지 않지만, 회계기준은 일정한 범위에서만 어느 정도 조화되어 있음
  - 회계기준과 재무보고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보고의 조화(harmonisation)를 위한 법령들이 마련되었으나, 이는 일반원칙이 국내 법령으로 도입된 결과로, 국가마다 회계체계는 차이가 있음
  - 2001년에 재무보고 조화를 위해 기존 법령들을 개정한 시가 지침(Fair Value Directive; 2001/65/EC)은 EU 국가들이 모든 회사에 대해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에 시가를 적용하도록 함
  - 2002년에는 EU 국가들의 회계 및 재무보고 법령에 IFRS를 사용하도록 하여, 2005년부터 상장회사들은 IFRS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보고해야 함
- 오늘날 보고체계들의 공존 때문에 재무보고체계는 국제적으로 다양화됨
  - 회사들은 국내 회계기준과 IFRS 중 하나에 따라 보고하는데, 많은 사례에서 법령에서 정한 재무제표에는 국내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에는 IFRS를 적용함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IFRS를 적용하는 것은 EU 국가 그리고 많은 다른

요소(상장 여부,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에 따라 선택사항일 수도 있고, 의무사항일 수도 있음

- 많은 EU 국가에서 국내 회계기준은 규정된 회사(신용회사나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특수한 회계체계를 두고 있음
- 개별 회사들의 특수한 거래에 적용되는 회계처리는 그 회사가 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달라짐

### 3. 금융상품(Financial Instruments)을 위한 회계처리

#### □ 역사적 비용과 공정가치

- 네 번째로 열린 의회 보고서(78/660/EEC)의 특정 지침은 금융상품들의 측정과 구매가격과 제품 비용(역사적 비용)의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방법 또는 가치측정의 측면에서 사용될 수 있음
- ‘시가 지침(Fair Value Directive)’은 회원국에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의 가치측정에 대한 시가 지침의 사용 가능성을 소개하였음
- 이러한 시도의 결과로 회원국 간의 역사적인 가격과 시가가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된 형태의 틀이 존재하고 있음

#### □ 헤징(Hedging)과 거래(Trading)

- 파생상품에 대하여는 파생상품이 헤징을 목적으로 계약되었는지 또는 거래이익을 위해 체결되었는지에 따라 회계적으로 다르게 처리될 수 있음
- 헤징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은 회계적인 변동을 감소시키거나 피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회원국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 한 가지 상품에 다른 회계처리 적용

- 현재의 회계기준은 한 가지 금융상품에 대하여 다른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이러한 회계처리의 차이는 회원국 회계제도가 다른 데에도 기인하지만 회계 감사 목적상의 회계처리 또는 관습적인 회계처리의 차이에서도 기인함
- 시간 차이에 의한 회계처리 차이
- 회계처리의 차이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시간 차이에 따른 회계처리의 상이함 때문인 경우가 많음
  - 파생상품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어떠한 시점에서 회계처리를 하는지에 따라 파생상품의 측정된 가치가 기업의 손익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과세표준에도 영향을 미침
  - 그러나 파생상품은 손익이 실현된 시점에서 회계처리 시에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를 보여줌

#### 4. 금융상품에 대한 특별한 회계처리 규칙: 금융상품에 대한 세무적 처리의 잠재적인 효과

- 금융상품에 대한 특별한 회계규칙
-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은 금융상품에 대한 특별한 회계처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계적 이익과 세무적 과세표준이 달라짐
  - 해당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임
- 금융선물과 콜 스톡 옵션(Call Stock Option)에 대한 시장가격 표시
-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과 콜 스톡 옵션(Call Stock Option)에 대하여 시장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면 회계처리에 기록된 가격은 장부 가격이 아닌 현재의 시장가치임

- 조사 결과 모든 국가에서 시장가격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며 키프로스,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스위스가 해당 국가임
  - 헝가리는 시장가격 표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는 회계적으로는 원가 혹은 시장가격 아래로 표시하고 있었으나 세무신고 시에는 선택적으로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함
  - 핀란드,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스웨덴에서는 시장가격 표시가 일반(Normal)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만 통용되고 있음
  - 독일, 불가리아, 몰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체첸공화국 등에서는 시장가격 표시 회계처리가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음
- 조사 결과는 시장가격 표시가 더 유용하지는 않음을 나타냄
- 당해 조사에서 시장가격으로 표시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유용하지 않다는 결론을 알아냄
  - 일부 사례에서는 시기에 따른 시장가격의 반영을 통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음
- 세무적 관점에서도 시장가격 표시 회계처리는 불리할 경우도 있음
-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이 상승한다면 거래의 실현 전에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예상 시점보다 빠르게 이익을 인식하게 되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5. 주식스왑(Equity Swaps) 상품과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

- 주식스왑(Equity Swaps) 상품과 금융선물(Financial Futures)로부터 생긴 수입은 익금이며 손실이 난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 해당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임

- 과세시점은 손익이 미실현된 시점에서 과세하는 국가도 있고 실현된 시점에서 과세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일관적인 과세시점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6. 옵션 프리미엄(Option Premium)에 대한 세무적 처리

- 옵션 프리미엄의 지급에 대한 처리는 대부분 국가에서는 옵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해당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임
  - 그러나 독일은 특정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은 옵션 거래비용으로 보지 않는데, 이에 대한 해당 국가는 덴마크, 독일, 핀란드, 슬로바키아임
  - 폴란드와 포르투갈 등 소수의 나라에서는 옵션 프리미엄은 옵션 취득가액이나 옵션 거래비용 어느 쪽도 구성하고 있지 않음
- 발행자가 수취한 옵션 프리미엄은 대부분 국가에서 발행자에게 과세함
  - 다만, 과세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함
    - 대체로 손익이 인식되는 시점에 과세함
    - 다만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슬로바키아는 옵션의 실행이나 소멸 시점에 과세함
    - 한편, 덴마크, 독일은 옵션이 발행될 때 과세함
-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할 때 손익을 세무상으로 인정<sup>6)</sup>하는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음
  - 인정하는 국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라트비아
  - 인정하지 않는 국가: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

6) 이익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에 가산되고, 손실인 경우에는 과세소득에서 차감됨을 의미함

- 옵션의 양도에 대한 세무처리는 상황마다 다르나, 대부분 국가에서는 옵션양도로 인한 손익은 세무상으로 인정됨
- 옵션 실행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세무상으로 인정됨
  -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 국가의 해당 법률에 따라 특정한 주식양도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제외하기도 함
- ① 지분스왑이나 금융선물, ② 지분스왑이나 금융선물의 양도, ③ 주식에 대한 콜옵션의 취득으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옵션 프리미엄 때문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다만 미국은 예외임
  - 또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불가리아는 10%, 슬로바키아는 19%

## 7. 파생상품에 대한 세무적 처리

- 조세 조약상 파생상품이나 파생상품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분류는 국가마다 다르기도 하고 불분명하기도 함
  - 대부분 국가에서 지분스왑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 금융선물로 인한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함
    - 하지만 오스트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는 지분스왑이나 금융선물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other income)으로 분류함
  - 대부분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에서 지분스왑이나 금융선물의 양도로 인한 이득을 자본이득으로 봄
    -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사업소득(business profit)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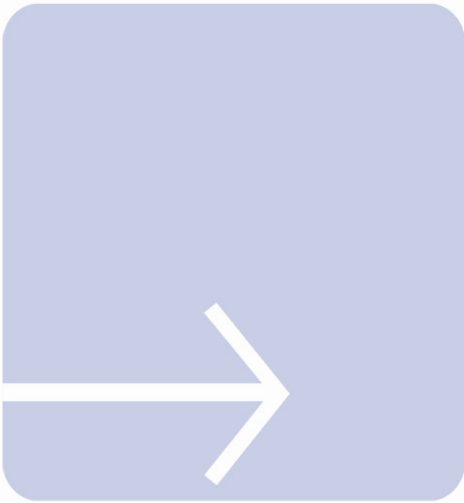
- 주식에 대한 콜옵션의 취득으로 지급하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분류가 다름
  - 사업소득, 자본이득, 기타소득으로 각각 분류함
- 대부분 국가에서 파생상품 거래의 상대방(counterparty)이 금융기관이 아니더라도 금융기관인 경우와 세무처리상 차이가 없음
  - 다만 불가리아에서는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 간에 세무상 차이로 인해 금융상품(예를 들어 주식스왑, 금융선물, 콜옵션)에서 발생한 이득이나 손실은 금융기관에서는 인정되나, 비금융기관은 만기 시 처분으로 인한 이득·손실의 경우에만 인정됨
  - 미국에서는 투기 목적이 아닌 헤지 목적의 선물계약은 세무처리상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콜옵션은 비딜러(non-dealer)와 다르게 딜러(dealer)는 옵션에 대하여 시가(market-to-market)에 따른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음
  - 프랑스에서는 금융기관이 시가에 따른 회계처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파생상품에 대한 세무처리가 비금융기관과 차이가 발생함
  -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거래의 특성에 따라 세무처리상 차이가 있음
    - 사업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자본이득으로 과세하므로 비금융기관이 거래에 참여하고 기초자산이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아니라 자본이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음
  - 독일에서는 주식스왑이나 금융스왑의 계약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주식스왑 계약이나 선물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그 금융기관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원천적으로 공제되지 않음
    - 계약자가 비금융기관인 경우 주식스왑계약이나 선물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지급 시 관련된 세금을 원천적으로 차감한 금액을 받음
- 앞에서 언급한 토픽에 관하여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이나 지사 간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미국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법인인지 또는 지점인지에 따른 차이는 있음
    - 예를 들어,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은 소득의 포함 여부와 경비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복잡한 규정을 적용받음
  -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과세당국의 행정적인 면제방침이 없으면 지점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별로 원천징수할 수 있음
- 대부분 국가에서 실무와 관련 법규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차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 제2부 주요 국가별 조세동향





## I. 미국/캐나다

### 1. 미국

[조세동향 12-10호]

#### 가. 미국과 영국 간의 FATCA 협약 체결

- 2012년 9월 12일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국가 간 세금 원천징수의무와 세무 정보 신고의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세무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에 대한 상호협약에 서명함
  - 본 협약은 승인을 위해 영국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협의 후에 당해연도 말경에 법 초안이 공포될 예정임
  - FATCA란 해외 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으로 하여금 미국 납세자 또는 미국 납세자가 소유한 해외회사(foreign entities)의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임
    - 본 법은 해외 계좌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3월 최초 제정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이번 협약으로 영국 금융기관은 조세회피 방지라는 목표의 달성에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금융기관의 FATCA 의무 준수에 있어서 관련된 법적 장애물(legal barriers)에 대해서도 제고하게 될 것임
  - 또한 금융기관 이외에 정부산하기관(Governmental Organizations), 퇴직연금, 비영리법인 등의 영국 기관도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 이번 영국과의 협약은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5개국이 2012년 2월부터 공동으로 논의하여 2012년 7월 26일에 확정되었던 정부 간 협약 모델(Model Intergovernmental Agreement)에 근거함
  - 협약 모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외국 금융기관의 특정 계좌정보를 상호 각국의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함
  - 미국은 국가 간 동등한 수준의 상호 자동정보교환 달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시행규칙(regulations)이나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이를 실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약속함
  - 해외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률적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임
- 미국 재무성은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FATCA의 실행과 관련하여 정부 간 협약 모델 협상국 4개국 외에 OECD 회원국 및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과도 계속하여 협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함

#### 나. 해외 자선단체에 대한 성실법인 지정 방법 변경

- 2012년 9월 21일 재무성과 국세청은 해외 자선단체(foreign charitable organization)에 대한 ‘성실법인 지정(making a good faith determination)’ 방법에 대한 예고 시행규칙(Proposed Regulations, REG-134974-12)을 발표함
- 이는 해외 단체가 자선단체에 해당하며, 성실법인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정 방식에 대한 시행규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해외 단체의 성실법인 지정 방식에 관하여 새로운 시행규칙에서는 성실법인 지정의 근거로, 다양한 계층의 세무 실무자(tax practitioners)의 서면 의견서(written advice)까지 그 범위를 확대함
- 기존의 성실법인 지정은 주로 해외 단체의 자술서(qualifying affidavit), 기부자나 수증자 측의 법률 자문위원(counsel)의 의견 등에 근거하였음
  - 참고로 해외 단체에 대한 성실법인 지정여부에 따라 이 단체에 기부금(grants)을 지출하는 사설 재단(private foundations)의 소비세(excises taxes) 부담 유무가 결정됨
- 다양한 계층의 세무 실무자에는 변호사, 회계사, 등록된 대리인(enrolled agent) 등이 있음

- 그러나 적절한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외국 법률 자문위원은 포함되지 않음
- 근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성실법인 지정에 필요한 전문가적인 세무 의견을 보다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함
- 또한 새로운 시행규칙은 성실법인 지정에 관하여 세무 실무자의 의견서를 신뢰한 사실 재단에 대하여, 면책 규정<sup>7)</sup>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면책 규정에서는, 납세자가 합리적인 이유(reasonable cause)가 있음을 증명하고 세금 과소납부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면 세금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세가 면제 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본 예고 시행규칙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발생한 사실 재단의 기부금에 대하여 적용됨

#### 다. 신시장 세액공제 관련 세부규칙 제정

- 2012년 9월 26일 재무성과 국세청은 저소득 지역사회(Low income communities)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非)부동산 투자(Investments in non-real estate)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신시장 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에 대한 최종 시행규칙(Final Regulations, T.D. 9600)을 발표함
  - 이는 2011년 7월 발표했던 예고 시행규칙(Proposed Regulations)의 내용을 기초로 확정한 것임
  - 본 시행규칙은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Entities: CDE)의 투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시장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사회 사업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재개발에 대한 세금감면법(Community Renewal Tax Relief Act of 2000)」이 제정되면서 그 내용 중 한 부분으로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Sec.45D에 신시장 세액공제 조항을

7) IRC Sec.6664

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관련 내국세법에 따르면, 적절한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Entities; CDE)<sup>8)</sup>에 적격지분투자(Qualified Equity Investments; QEI)<sup>9)</sup>를 하는 개인에게 법인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지분투자는 지역개발회사(CDE)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체에의 자금융통, 지역사회 편의시설(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소득지역<sup>10)</sup>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옴
- 지역개발회사(CDE)에 투자한 적격지분투자(QEI)에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최초 투자일로부터 7년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음
  - 공제율은 처음 3년간은 5%, 다음 4년간은 6%로서 총 대상기간에 걸쳐 39%를 공제받음
  - 만약 지역개발회사(CDE)가 청산하거나 자금이 적격한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에 쓰이지 않는 경우, 투자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등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함

□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예고 시행규칙에서의 다음의 사항을 채택하였음

- 비(非)부동산 사업분야의 적격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를 수행하는 지역개발회사(CDE)의 투자 수익금을 특수관계 없는 인증된 지역개발금융기관(Certified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 CDFI)에 재투자하는 것을 허용함
- 이러한 인증된 지역개발금융기관(CDFI)에의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기간(7년) 내내 적격한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로 인정됨

□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함

- 
- 8)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형태로 가능함
  - 9) 투자자에 의해 현금 교환방식으로 최초 주식 발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현금의 거의 모든(85% 이상) 부분이 지역개발회사에 의해 적격한 저소득 지역사회 투자에 사용되어야 하며, 지역개발회사는 적격지분투자라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보관하여야 함
  - 10) 빈곤율이 최소 20% 이상인 지역,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중간소득가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중간소득가계 수준의 80%에 미달하는 지역, 재난 피해지역 등이 여기에 속함

- 재무성 장관이 적격 지역개발회사(Qualified CDE)를 국세청 게시판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게 함
  - 하나 이상의 지역개발회사(CDE)에 의해서도 적격한 능동적 저소득 지역사회사업(Active Low-Income Community Businesses)으로서 비부동산 분야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 적격지분투자(QEI)로서의 자금을 공급받은 지역개발회사(CDE)는 그 투자금이 적격한 비부동산사업 분야에 쓰여졌음이 직접적으로 추적된다면 투자금을 또다른 지역개발회사(CDE)에 투자할 수 있음
- 이번에 확정된 최종 시행규칙은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함

## II. 유럽

### 1. 그리스 긴축재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

[조세동향 12-12호]

- 그리스 정부는 12월 6일 긴축 입법 도입계획의 일환으로 법인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을 발표함<sup>11)</sup>
  - 금번 세율 인상안의 배경은 EU와 IMF가 제공하는 1,090억유로의 지원 패키지 중 2013년에 제공될 90억유로에 대응하여 중대한 세제개편을 요구한 것에 따름
- 세제 개편안은 법인세율 인상과 소득세 상위세율(40%) 적용구간의 강화가 주된 내용임
  - 법인세율은 현행 20%에서 26%로 인상함(그리스 법인세는 20% 단일세율)
  - 소득세는 40%세율 적용시점 소득을 현행 6만유로에서 4만유로로 낮추어 중산층에게 더욱 많은 세금을 걷는 방향으로 적용 구간을 변경함

<표 II-1> 그리스의 소득세

(단위: %, 유로)

세율	현재 과세구간	개정안의 과세구간
0	0~12,000	0~12,000
18	12,001~16,000	12,001~16,000
24	16,001~22,000	16,001~22,000
26	22,001~26,000	22,001~26,000
32	26,001~32,000	26,001~32,000
36	32,001~40,000	32,001~40,000
38	40,001~60,000	-
40	60,001~100,000	40,001~100,000
45	100,001~	100,001~

11) <http://www.taxanalysts.com/>

- 세계개편안 중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로 임금 또는 연금이 연간 25,000유로 이하의 계층에는 면세점을 현행 5,000유로에서 9,000유로로 높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일정부분 보장하려고 하는 내용을 포함함

## 2. 덴마크 2012 개정세법

[조세동향 12-07호]

### 가. 2012 조세개혁

- 덴마크 국무총리는 2012년 5월 29일에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세제조치가 포함된 2012 조세개혁(2012 Tax Reform)을 발표함
  - 2012 조세개혁에는 경기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조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세법 개정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세제조치는 주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조치가 대부분이나, 금융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1) 운영설비투자액 추가 감가상각 허용 등 법인세 관련 세제조치

- 2012 과세연도 및 2013 과세연도에 대해 법인의 운영설비투자액의 15%까지 추가 감가상각이 허용될 예정임
  - 2012년 5월 30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운영설비투자액의 15%까지 추가 감가상각이 허용될 예정임
  -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법인은 투자액의 115%를 감가상각비로 인식할 수 있음
  - 이는 법인의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임
  - 운영설비투자액이란 공장, 설비기계 등의 신규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함
    - 차량, 선박, 일부 임대설비 및 비행기, 발전소, 철도 시설과 같이 내용연수가 장기인 기계장치 등의 취득 비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금융사업 부문에 과세하는 급여세(payroll tax) 세율이 10.5%에서 12.3%로 인상될 예정임
  - 덴마크는 금융사업, 신문 출판, 도박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부 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에게 급여세를 과세함
  - ‘2012 조세개혁’의 내용에 따라 금융사업 부문에 과세하는 급여세 세율이 인상되면, 급여세 납세의무를 지는 은행, 연금펀드, 보험회사 등과 같은 금융 부문 사업자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유한 비상장 주식으로서, 지분율이 10% 미만인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될 예정임
  - 다만, 상기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은 계속 과세될 예정임

## 2) 최고세율의 과세소득구간 하한 인상 등 소득세 관련 세제조치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소득 구간의 하한이 인상될 예정임
  - 현행 덴마크의 개인소득세제에 따르면 389,900덴마크크로네 이하의 과세소득은 4.64%로, 389,900덴마크크로네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은 19.64%로 과세됨
  - 19.64%가 적용되는 과세소득 구간의 하한이 389,900덴마크크로네에서 467,000덴마크크로네로 상향조정될 예정임
- 현행 4.4%인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가 2020년까지 10.65%로 인상될 예정임
- 외국인에 대한 임시거주 소득공제(travel allowance) 한도가 인하될 예정임
  - 덴마크는 근로를 목적으로 덴마크에서 임시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2년간 임시거주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 최초 12개월은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은 실제 발생한 거주비, 식료품비 등을 공제
  - 2012 조세개혁에 따르면 현행 50,000덴마크크로네인 임시거주 소득공제 한도

액이 25,000덴마크크로네로 인하될 계획임

- 이는 덴마크 법인의 외국인근로자 단기고용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회사가 복리후생으로써 제공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될 예정임

#### 나.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 환급규정 개정

- 2012년 6월 13일에 원천징수세 환급규정에 대한 개정세법(No. L173)이 덴마크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외에 지급하는 배당, 로열티,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환급규정이 개정됨

- 개정된 규정은 2012년 6월 30일 이후 처리되는 환급 건부터 적용될 예정임

- 비거주자·외국 법인이 국외로 배당, 로열티, 이자 등을 지급할 때 덴마크 세법에 따라 25~27%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되며, 조세조약에 따라 이보다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덴마크 과세당국에 세액 환급을 신청해야 함

- 2012년 6월 13일에 승인된 개정세법(No. L173)에 따라 납세자의 환급 신청시점 으로부터 6개월(개정 전에는 30일)까지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납세 자가 과세당국에 관련정보 또는 자료를 적절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이 기간을 중단할 수 있게 됨

-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됨

- 개정 전: 연 7% + 덴마크 중앙은행 대출금리를 기초로 한 가산이자율(2012년 상반기 기준 연 7.7%)

- 개정 후: 월 0.4% + 나스닥 북유럽 증권거래소(NASDAQ OMX Nordic) 채권 상환이율(redemption yield of certain bonds)을 기초로 한 가산이자율(2012년 기준 월 0.5%)

- 또한, 납세자가 향후 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밝혀질 시, 환급세액을 재납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과세당국은 세액을 환급하기 전 납세자에게 담보설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3. 스페인 개정세법

[조세동향 12-08호]

- 스페인 관보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의 개정 사항이 포함된 개정세법(Royal Decree-Law 20/2012 of 13 July 2012)을 2012년 7월 14일에 공포함
  - 동 개정세법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12년 7월 15일부터 유효함
  -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 등 법인세 개정

-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limitation on the deduction of financial expenses)의 적용 대상이 변경되고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에 대한 최소공제액(minimum deduction)이 제한됨
  - 스페인은 2012년 3월 31일에 시행된 개정세법(Royal Decree-Law 12/2012 of 30 March 2012)을 통해 과소자본세제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를 신설한 바 있음
    -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란 과도한 차입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법인의 금융비용을 일정 한도까지만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 2012년 3월 31일에 신설된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그룹의 계열사를 적용대상으로 함
    - 적용대상 법인은 영업이익<sup>12)</sup>의 30%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 가능

12) 이때 영업이익은 법인세, 이자 및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을 의미함

- 다만, 1백만유로는 최소공제액으로서 한도와 관계없이 공제 허용
  -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의 적용대상 및 최소공제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
    - 기업그룹의 계열사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에 대해 금융비용공제 제한제도가 적용됨. 다만, 보험회사, 금융회사 및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일부 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에 대해 1백만유로인 최소공제액을 과세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제한함
  - 이와 같은 개정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 일정 규모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축소됨
- 스페인은 세수확보를 위해 2011~2013과세연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 매출액이 2천만유로 이상 6천만유로 미만인 법인: 이월결손금의 75%까지 가능
    - 매출액이 6천만유로 이상인 법인: 이월결손금의 50%까지 당기이익에서 공제 가능함
  - 이번 세법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2012~2013 과세연도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기존보다 축소됨
    - 매출액이 2천만유로 이상 6천만유로 미만인 법인: 이월결손금의 50%까지 가능
    - 매출액이 6천만유로 이상인 법인: 이월결손금의 25%까지 당기이익에서 공제 가능함
- 무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해 허용되는 연간 감가상각률이 10%에서 2%로 인하됨
- 다만, 인수합병 또는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연간 감가상각률은 이번 세법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1%로 유지됨

#### 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상

- 강의, 기고, 예술 또는 과학 업무로부터 발생한 소득과 전문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15%에서 다음과 같이 인상됨
  - 2012년 12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21%
  - 2014년 1월 1일 이후: 19%

#### 다. 부가가치세율 인상 및 표준세율 적용 대상 영역거래의 확대

- 2012년 9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이 다음과 같이 인상됨
  - 표준세율: 18%에서 21%로 3% 인상
  - 경감세율: 8%에서 10%로 2% 인상
    - 초경감세율은 변동 없이 4%로 유지됨
- 2012년 9월 1일부터 호텔, 디스코장, 예술공연, 영화, 일반공연, 동물원, 놀이공원, 장례 서비스, 특별 공제대상이었던 학교설비 이용거래 등에 대해 경감세율 대신 표준세율이 적용됨

## 4. 네덜란드 2013년 예산안 및 세법 개정

[조세동향 12-08호]

- 네덜란드 상원(Eerste Kamer der Staten-Generaal)은 7월 10일에 표준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의 개정안이 포함된 2013년 예산안을 가결
  - 주요 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가. 법인세

-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투자자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75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지분

투자관련 이자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지분투자 관련 이자비용은 총이자비용에 평균적인 지분투자 관련 부채가 총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네덜란드나 외국회사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달한 금융비용은 소득에서 공제됨
  - 한편 그 주식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 등은 지분 관련 이중과세방지제도(Dutch Participation Exemption)에 따라 과세에서 면제됨
  - 지분 관련 이중과세방지제도(Dutch Participation Exemption): 법인이 수취한 배당 소득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를 의미함

#### 나. 부가가치세

- 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19%에서 21%로 인상
  -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여 사업자가 고용을 증대할 경우 증가하는 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음

#### 다. 부동산취득세(Real Estate Transfer Tax)

- 현행 부동산이전세는 네덜란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취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으로, 세액은 취득금액의 6%임
  - 부동산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부담함
- 2011년 6월 15일 현재 이후로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주택(private dwelling)의 경우 부동산취득세의 세율을 현행 6%에서 2%로 인하함
  - 이 세율인하 조치는 네덜란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6월 15일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시행함

## 라. 비상인건비추가부담금(Wage Tax Crisis Levy) 도입

- 고용주(employer)가 종업원(employee)에게 2012년에 지급한 급여 중 종업원별로 15만유로를 초과한 경우 고용주는 그 초과한 금액의 16%를 비상인건비추가 부담금(wage tax crisis levy)으로 납부하여야 함
  - 비상인건비추가부담금은 2012년에 지급한 급여에 한하여 적용됨
  - 현행규정에 따르면 급여가 15만유로를 초과한 경우의 소득세율은 52%임
  - 비상인건비추가부담금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에게 이전되어서는 아니 됨

## 마. 네덜란드의 2013년 세법 개정(안)

[조세동향 12-10호]

- 네덜란드 정부는 2012년 9월 18일에 과소자본세제의 폐지 등이 포함된 2013년 세법 개정안(2013 tax plan)을 하원에 제출함<sup>13)</sup>
  - 현재 의회 심의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법인세

-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제도를 폐지함
  - 현행 제도: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음
  - 폐지 이유: 지분투자와 관련한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제도 도입으로 인해 불필요한 제도가 됨
- 「회사법의 간소화를 위한 법률」의 개정으로 의결권 없는 지분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연결과세제도 적용요건을 개정함

---

13) 지난 7월 10일에 발표한 예산안은 재정법안(Finance Bill)에 포함된 내용임

- 현행 요건: 지배회사는 피지배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9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개정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개정됨
  - 첫째, 피지배회사 납입자본금의 9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둘째, 피지배회사의 의결권(voting right)의 95%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 셋째, 피지배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의 95% 이상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여야 함
- 개정 이유: 『회사법의 간소화를 위한 법률(Act for simplification and flexibilization of private company law)』의 개정으로 인해 의결권 없는 지분의 발행이 가능하므로 연결과세제도 적용요건인 지분율의 요건을 개정함

## 2) 소득세

-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에 대한 이자비용의 공제요건을 강화함
  - 현행: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기간 종료 시 전액상환 요건이 없어도 그 이자비용의 공제가 가능함
  - 개정 요건: 주택담보대출 계약에 30년의 거치기간 후 전액상환 요건이 포함되어야만 그 담보대출로 인한 이자비용이 공제될 수 있음
  - 개정 이유: 상환되지 않는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기 위함

## 5. 러시아 세법 개정

[조세동향 12-9호]

### 가. 세법상 외국인에 대한 채권이자수익의 원천징수면제

- 세법상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채권이자수익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해 주는 세법 개정안이 러시아 대통령에 의하여 2012년 6월 29일에 승인되었고, 2012년 7월 1일에 공포됨

- 2012년 6월 29일에 승인된 세법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4년 1월 1일 전까지 발행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권에 대하여만 효력이 발생함
- 현재 러시아 세법에서는 국외로 이자수익 지급 시에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 면제는 이자에 대한 세금 면제와 같은 효과임
-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조건은 러시아 기관 또는 러시아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관이 외국의 기관들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하에서 면제되는 것임
  - 이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는 러시아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자가 지급될 때만 적용됨
  - 이자수익 원천징수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기관이 러시아와 조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자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증명이 가능해야 함
  - 러시아 국내에서 국외로 지급되는 이자수익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지급사실을 보증받은 지급이어야 함
- 이자수익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채권은 러시아 당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채권이어야 하며 해당 채권들에는 러시아 주정부나 지방정부채권 또는 외국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 등이 있음
  - 러시아 주정부채권 또는 지방정부채권
  - 외국법에 의하여 발행된 채권들 중 다음 요건들 중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채권들
    -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채권
    - 러시아 증권당국에서 승인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의 채권예탁과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채권

#### 나. 러시아 세무당국으로의 재무제표 제출의무 신설

- 러시아는 세무당국에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작성 대상 납세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세법을 개정하였으며, 당해 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다. 은행거래정지에 대한 요청규정 신설

- 러시아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은행거래에 대하여 계좌 동결 또는 동결 해지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은행에 전자적인 형태로 결정문을 보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됨
- 당해 세법 개정은 2012년 8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함

## 6. 아일랜드 지방 재산세 도입

[조세동향 12-12호]

- 아일랜드 정부는 12월 5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지방재산세의 도입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7월부터 발효 예정이고, 새로운 세제는 과거의 재산세제를 대체하는 것임<sup>14)</sup>
- 기존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제는 1주택당 연간 100유로의 정액과세였으며 2012년 1월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되어 오고 있음
- 새로운 재산세제는 정률과세로 변화될 것이며 100만유로 미만의 주택은 연간 0.18%의 세율이 적용되며, 100만유로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연간 0.25%의 세율이 적용될 것임
- 과세는 10만유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5만유로의 범위를 두고 과세될 것이며 범위 값의 중간 값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짐
  - 예를 들어 18만유로의 가치로 판명된 주택은 15만~20만유로 사이에 위치하게 되며 과세표준은 15만유로와 20만유로의 중간값인 17만 5,000유로가 됨
  - 과세표준을 5만유로의 범위 안에 위치하게 하여 매년 변동하는 집값과 크게

14) <http://www.taxanalysts.com>

- 상관없이 세금이 급격히 늘거나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저소득자에게는 세금의 유예는 허용하지만 미납가산세 등은 원칙대로 부과할 예정임
- 아일랜드 정부는 새로운 재산세가 집값에 대하여 정액으로 부과하던 세금방식에서 벗어나 정률과세 및 누진과세를 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세액징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7. 영국의 세금회피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조세동향 12-12호]

### 가.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전략에 대한 대응을 위한 지원 확대 선언

- 2012년 12월 3일 영국의 재무부 장관 George Osborne은 영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회피 실태 및 개인들의 해외로의 세금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HRMC(영국 국세청)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표함<sup>15)</sup>
  - 영국 재무부의 공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의해 영국 내로부터 해외로 기업 이익을 이전하여 영국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는 실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대응 강화에 부수하여 개인들의 역외 세금 회피에 대한 대응 강화 효과도 동시에 목적으로 함
  - 재무부는 7,700만파운드를 HRMC의 특정 부서(세금회피 추적 부서)로 배정할 것이며 인력 지원 및 법률적 지원도 뒤따를 것이라고 공언함
    - 금번에 공표된 지원은 HRMC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한 인지 및 이해 속도를 높이고 그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임

15) [http://www.contractoruk.com/news/0010831osborne\\_hands\\_hmrc\\_77m\\_hit\\_tax\\_avoiders.html](http://www.contractoruk.com/news/0010831osborne_hands_hmrc_77m_hit_tax_avoiders.html)

- 100여명 정도의 담당부서 인원이 증원될 예정이며 개인소득세 조사의 전문가들 또한 증원되어 신탁, 해외계좌, 그 밖의 해외 자산을 통한 역외 탈세 행위를 감시하게 될 것임
- 금번 발표에 추가하여 HRMC의 IT분야에 추가적으로 3,000만파운드의 투자 계획도 세워 놓았으나 투자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HRMC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인하여 영국 재무부는 2014년까지 연간 2억파운드의 추가 세입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나. HRMC에 대한 지원 확대의 배경인 스타벅스 조세회피 사건

- 영국 및 프랑스에서는 최근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세금체계를 이용한 조세회피전략을 세워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내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포착함
- 대표적인 다국적 기업인 스타벅스는 유럽총괄본사를 세율이 낮은 네덜란드에 설립한 후 상표로고·매장디자인 로열티 등의 명목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매출의 상당 부분을 네덜란드로 이전시키는 전략을 사용함<sup>16)</sup>
- 스타벅스는 매출액의 상당 부분(매출액의 6%)을 이전시킨 후 영국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을 남겨진 영국 매출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납부액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함
- 법인세율이 낮은 네덜란드(지적자산 관련 법인세율 15%)로의 매출이전 전략을 사용한 결과 스타벅스는 1998년 영국 진출 이후 14년간 30억파운드 정도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 납부는 860만파운드 정도만 이루어졌음
- 위와 같은 전략은 영국의 법인세율이 24%인 데 반해 네덜란드는 지적 재산권 관련 법인세율이 16%로 큰 차이가 있기에 가능하였음

16) <http://adage.com>

- 스타벅스의 또 다른 조세회피전략은 커피의 원료인 원두를 스위스 법인에서 들여 오면서 원두 판매 이익을 스위스 법인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임<sup>17)</sup>
  - 스위스에서 12%로 과세되는 커피 도매에 적용되는 세율과 영국에서의 법인 세율(24%)과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전략임

## 8. 핀란드 자산이전세 변경

[조세동향 12-12호]

- 핀란드 정부는 과세범위 확대와 세율 인상의 내용을 담은 자산이전세 변경안을 의회에 제안하였으며, 새로운 자산이전세는 의회 통과시 2013년 7월 1일 이후 행해지는 거래에 대하여 적용될 예정임<sup>18)</sup>
- 현행 자산이전세는 부동산의 거래 또는 부동산기업의 주식 이전(증여, 매각 등 모든 소유권의 변화 포함)시에 부과되고 있으며 이전을 받는 쪽이 납부함
  - 부동산기업의 주식 이전 시에는 1.6%의 세율이 적용되며, 직접 부동산을 이전 시킬 때에는 4%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부동산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은 매도기업과 매수기업이 모두 핀란드 국적의 기업이어야 하는 것임
  - 현행 세제하에서는 자산이전세가 발생하는 두 가지 경우의 세율차가 현격하므로 그 차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인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새로 도입되는 자산이전세는 부동산기업의 주식이전에 대한 세율을 현행 1.6%에서 2%로 상승시키고 과세표준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음
  - 확대된 과세표준의 범위에는 매도기업이 매수기업에 공헌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임

17) <http://www.bbc.co.uk/news/business-20288077>

18) <http://www.ibfd.org/>

- 주식 매매 시 매도기업의 도움으로 부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차환할 시 그에 대한 공헌도를 인정받아 매도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기로 함
- 양도하는 주식에 기인하는 부채를 매수기업이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식을 양수받을 경우 그 상환한 부채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당한 세금회피를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lt;표 11-2&gt; 거래 형태에 따른 과세표준의 변화

거래 형태	주식가액(100) + 해당 주식에 부수된 부채(100)
종전	해당 주식에 부수된 부채를 계약서에 매수기업이 상환하기로 하고 주식을 매수해도 주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표준이었으며 과세표준은 100이 됨
개선	해당 주식에 부수된 부채를 계약서에 매수기업이 상환하기로 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가액과 상환한 부채 모두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이 200이 됨

- 핀란드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자산이전세가 인위적으로 거래구조를 조작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과세행정이 이루어지게 될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9. 프랑스 2012 수정 예산안

[조세동향 12-07호]

- 프랑스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는 2012년 7월 4일에 공격적인 법인세 회피 방지 방안 등이 담긴 2012년도 수정 예산안(modified finance bill 2012)을 승인하였음
  - 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는 2012년 7월 16일에 시작될 예정
  - 2012년도 수정 예산안의 주요 사항은 아래에 요약

## 가. 금융거래세

- 2012년 8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인 금융거래세의 적용세율을 0.1%(현행 안)에서 0.2%로 인상
  - 금융거래세를 납부하는 자는 ① 프랑스에 본사가 있고 시가총액이 10억유로 이상인 상장회사의 주식을 사거나, ② 자동화된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and automated trading)를 수행하는 중에 취소되거나 수정된 주문을 내거나, ③ 신용부도스왑(CDS)를 사는 자임
    - 고빈도거래(HFT): 대형 기관투자가가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슈퍼컴퓨터를 이용, 투자가들의 거래현황을 즉시에 인식하여 주문을 내거나 취소하여 수행하는 거래
  - 금융거래세 과세표준대상은 ① 프랑스에 본사가 있고 시가총액이 10억유로 이상인 상장회사 주식의 매입가격, ② 자동화된 고빈도거래(high frequency and automated trading)를 수행하는 중에 취소되거나 수정된 주문금액, ③ 신용부도스왑(CDS)에 의해 보전하기로 계약된 금액임

## 나.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인상 계획을 취소
  - 1차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기본세율을 현행 19.6%에서 21.2%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차 수정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취소함
- 일반 도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7%에서 5.5%로 인하함
  - 현행 기본세율은 19.6%이고 7% 경감세율은 2012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되어, 경감세율이 7%, 5.5% 및 2.1%로 구성됨
    - 도서의 경우 ① 소설, 사전, 백과사전 및 e-book 등과 같은 일반 도서는 7%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나, ② 특정한 출판 인쇄물의 경우 2.1%의 경감세율이 적용됨
  -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다. 법인세

- 종업원투자제도(PEE, Plan d'epargne entreprise)에 전입되는 금액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social levies, forfaits social) 비율을 현행 8%에서 20%로 인상함
  - 종업원투자제도(PEE): 종업원이 그의 급여 중 일부를 해당 회사에 적립하면 그 회사가 종업원 적립금에 대응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고 해당 회사나 그 회사의 계열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한 후 투자수익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 매출액이 2.5억유로를 초과하는 회사가 부담하는 법인세액에 대한 부가세액 5% 적용연도를 2012년과 2013년으로 분명히 함
  -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총매출액이 2.5억유로를 초과하는 회사(company)를 대상으로, 해당 회사 법인세에 대해 추가 5%를 부가세로 징수하는 것임
  - 이 부가세의 도입 취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함
- 석유회사가 비축한 석유나 석유제품에 대하여 비축량의 평균 금액에 대해 4%의 세율을 부가하는 제도를 도입
- 종업원이 20명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초과근무로 인한 소득으로 부담하는 사회보장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폐지됨
-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 시, 조세회피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 의무가 강화됨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세협력에 비협조적인 국가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필요
  -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저세율 국가나 지역에 투자하는 모든 경우에 조세회피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필요
  - 입증하지 못할 경우 모든 수익을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간주해 프랑스에서 과세

- 법인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기존 이월결손금의 공제요건을 강화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변경과 구조조정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요건이 불분명
  -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발행하는 예규(ruling)는 구조조정의 경우 그 회사가 고객과의 관계, 고용, 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사업변경의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을 최소 12개월 동안 유지하지 않을 경우 또는 회사의 평균 근무인력이나 고정자산을 50% 감소시키거나 3년 연속 감소시킬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라. 상속세·증여세

-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액을 현행 15만 9,325유로에서 10만유로로 인하함
  -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금액(순액)에서 인적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

#### 마. 금융소득 누진소득세율 적용 계획 재검토

[조세동향 12-10호]

- 프랑스 재무부장관 Perre Moscovici는 10월 4일에 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소득세율 적용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금융소득에 대한 누진소득세율 적용은 프랑스 정부가 2012년 9월 28일에 발표한 2013년 예산안에 포함됨
  - 2013년 예산안은 정부안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의회에서 검토 중임
- 현행 세법에 따르면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소득은 19~24%까지의 단일세율로 과세함
  - 현행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21%와 24%임
  - 현행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임

- 2013년 예산안에 따르면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음
  - 현행 누진소득세율은 아래 <표 II-3>과 같이 0~41%임
  - 이 조치로 20억유로의 세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재검토 이유: 이 조치는 고도기술 사업자의 창업과 주식양도의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음

&lt;표 II-3&gt; 현행 프랑스 누진소득세율(2012년)

(단위: 유로, %)

과세 구간	세율
5,963 이하	0
5,963 초과 ~ 11,896 이하	5.5
11,896 초과 ~ 26,420 이하	14
26,420 초과 ~ 70,830 이하	30
70,830 초과	41

## 10. EU 부가가치세 경감세율 축소

[조세동향 12-11호]

-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10월 8일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의 전반적인 축소를 제안하는 『경감세율 입법례 검토』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행 VAT directive<sup>19)</sup>에 따르면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은 최소 15%로 단일표준세율이어야 하나, Annex III에서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19)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J L 347, 2006. 11. 12. p. 1

- 현행 EU의 부가가치세율은 VAT directive Article 93부터 130과 Annex III에 규정됨
  - 회원국은 Annex III에 규정된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5%를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개나 두 개의 경감세율을 정할 수 있음
  - 다만, VAT directive article 98(2)에 따르면 모든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용역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은 경감세율의 적용이 배제됨
    - 배제 사유는 역내 시장에서 경쟁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임
  - 각국에서 적용하는 경감세율에는 영세율, 5% 경감세율, 중간세율(5~15% 사이의 세율)이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경감세율 입법례 검토』 보고서에서 경감세율의 전반적인 축소를 제안함
- 구체적인 내용은 ‘VAT 세율구조에 대한 검토를 위한 기본원칙(guiding principal)’에 표시됨

**VAT 세율구조 검토를 위한 기본원칙(guiding principal)**

- ① 역내 시장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경감세율을 폐지
- ② 해당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다른 EU 정책과 상반되게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감세율을 폐지
- ③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유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동일한 VAT 세율의 적용

- 『경감세율 입법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역내 시장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경감세율은 폐지하여야 함을 제안함
- VAT directive의 Annex III에 규정된 재화와 용역의 경우 경감세율의 적용이 역내 시장 활동을 저해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연구가 많았음
  - 하지만 2010년에 발행된 『VAT의 미래에 관한 녹색(green paper)』에 따르면 개인기업(private company)과 면세거래자(VAT-exempt trader)가 Annex III에 규정된 재화와 용역에 대한 VAT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경계지역에서는 경쟁의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 둘째, 해당 재화와 용역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다른 EU 정책과 상반되게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경감세율을 폐지할 것을 제안함
  - 환경보존정책에 반하여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정책적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과세거래로는 물과 에너지의 공급, 거리 청소·쓰레기 수집과 관련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경감세율의 적용이 있음
- 셋째,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유사한 재화와 용역에 대해 동일한 VAT 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함
  -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재화의 공급과 유사한 것을 on-line에서 공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예인 도서의 경우 Annex III에 규정된 재화에 해당되어 경감세율이 적용되나 E-Book에 대해서는 경감세율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인터넷 신문, 인터넷 잡지 등이 있음
  - 또한,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의 경우 off-line에서는 Annex III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되어 경감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on-line에서는 경감세율의 적용이 배제됨

## 11.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sup>20)</sup> 개정

[조세동향 12-12호]

### 가. 현행 GSP 제도 및 개정 배경

-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이하 GSP)는 특혜 공여 정도에 따라 일반 GSP, GSP+, EBA<sup>21)</sup> 3종류로 분류되어 수혜 품목 수, 특혜율 등이 상이하게 적용됨

20)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21) Everything But Arms,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

- 일반 GSP는 176개 국가 및 속령이 수혜 대상이며, 총 6,244개 품목에 무관세 및 관세 감축이 적용됨
  - GSP+는 지속가능한 개발, 인권 보호 및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와 관련된 국제 협약을 이행하는 15개 국가에 추가적인 관세 혜택 부여
  - EBA는 49개 최빈국에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부여함
- GSP 혜택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현행 제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
- 무역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이 GSP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 GSP 혜택이 필요한 국가들이 오히려 GSP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됨
    - 현재 EU GSP 혜택의 40% 정도를 이미 신흥선진개도국으로 경쟁력을 갖춘 러시아, 브라질, 중국, 인도, 태국이 누리고 있음<sup>22)</sup>

## 나. 개정 내용

- EU 집행위원회가 GSP 개정안(New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을 발표함<sup>23)</sup>
-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GSP 수혜 대상국 축소, ② GSP+ 수혜 확대, ③ GSP 졸업기준 및 국제규범 준수 검토, ④ EBA의 현행제도 유지에 관한 것임

### 1) GSP 수혜 대상국 축소

- GSP 수혜 대상국은 기존의 176개 국가 및 속령에서 89개국으로 축소됨
- EU는 GSP 수혜 대상을 축소하여 GSP 핵심 수혜국을 최빈국이나 중하위 소득 국가로 집중

22)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Karel De Gucht

23) 2012년 10월 31일

- 시장접근이 유리한 33개국, GSP와 동등한 혜택의 무역협정을 맺은 34개국, 지난 3년간 상위 혹은 중상위 소득 국가<sup>24)</sup>로 분류된 20개국이 GSP 대상에서 제외됨

## 2) GSP+ 수혜 확대

- GSP+의 개정안에서는 수입점유율 기준을 1%에서 2%로 높이고, 최상위 품목군을 5개에서 7개 품목군으로 변경
  - GSP+ 수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취약성(Vulnerability)으로 수입점유율이나 해당국 수출품목의 다양성 여부로 결정
  - 기존의 수입점유율 기준을 1%p 높이고, 수혜 대상 품목군은 현재 21개 중 5개 품목에서 세분화된 32개 품목군 중 7개 품목군으로 변경

## 3) GSP 졸업기준 및 국제규범 준수 검토

- GSP 졸업<sup>25)</sup> 판단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군·품목별 수입점유율이 변경되고, 국제규범 준수 여부가 GSP 부여 및 유지를 위한 기준으로 고려되며 이를 위한 감시 체제를 강화할 예정임
  - 졸업 기준 품목군은 현행 21개에서 32개로 확대되고, 품목별 수입점유율의 경우 일반제품은 현재 15%에서 17.5%로, 섬유 및 의류는 12.5%에서 14.5%로 상향 조정

24) World Bank에서 지난 3년간 GNI 기준으로 소득별 국가 분류

25) graduation principles, 수혜국의 GSP 수혜가 對 EU 수출 비중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 12.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부가가치세 관련 판결

[조세동향 12-12호]

### 가. 부동산 보유기업 주식의 양도에 부수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 유럽사법재판소(ECJ)는 2012년 7월 5일에 기업의 자산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상당하여 그 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을 경우라도 그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개용역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제공된 용역의 객관적인 성격(nature)이 유가증권의 양도와 관련된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1)(i)(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 네덜란드 「부가가치세법」 제11(1)(i)(2)조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양도와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네덜란드 국세청은 주식의 취득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같을 경우, 그 기업의 주식양도와 관련된 중개용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공급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시키지 않았음
  - 네덜란드 「부가가치세법」 제11(1)(a)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부동산 공급과 관련 있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않음

### 나. 재개발을 위해 취득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 유럽사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29일에 재개발을 위하여 토지와 함께 취득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결함
- 루마니아 과세당국은 재개발을 위해 철거할 예정인 건물은 과세거래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된 것이 아니므로 철거 예정 건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유럽사법재판소는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건물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야 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어야 공제된다고 판시함
  - 즉, 매입세액이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발생한 투자비용인 경우에는 공제됨
  - 사업자(taxable person)는 경제적 활동을 수행할 의도로 투자비용(investment expenditure)을 발생시키는 사람으로 정의됨
  - 사업자는 EU directive 제16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즉각적으로 공제할 수 있음

#### 다. 영리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강화의 위법성

- 유럽사법재판소는 2012년 11월 15일에 영리병원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위한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독일 과세당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을 강화함
  -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면세대상 의료용역은 복지사업과 사회보장사업과 매우 긴밀하게 관련 있어야하고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단체나 EU회원국이 자선단체로 인정하는 단체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요건이 추가됨
- 유럽사법재판소는, EU directive 제13A(1)(g)조에서는 의료용역의 면세요건에 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단체나 EU회원국이 자선단체로 인정하는 단체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함
  - 의료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EU directive 제13A(1)(g) 조는 이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Ⅲ. 아시아 / 오세아니아

#### 1. 대만 주식매매 등에 대한 소득세 과세

[조세동향 12-08호]

- 대만 입법부는 2012년 7월 25일에 주식매매 등에 대한 자본이득을 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Income Tax Act, ITA)」과 「소득기본세법(Income Basic Tax Act, IBTA)」을 개정함
  - 새로운 규정은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소득기본세는 소득세에 조세혜택을 더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을 재계산한 후 일정률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최저한세와 유사한 개념으로 파악됨
- 새로운 규정의 시행 이전 주식의 매매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은 법인과 개인이 달리 과세됨
  - 법인 납세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고, 소득기본세 계산 시 고려됨
    - 즉, 소득기본세 계산 시 주식매매
  - 개인 납세자도 법인납세자의 과세방식과 거의 유사하게 과세되지만, 소득기본세 계산 시 비상장된 주식의 처분에 대한 것만 고려됨
- 참고로 대만에는 증권거래세와 선물거래세가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증권교역세에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은행채와 회사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음<sup>26)</sup>
  - 대만의 증권거래세는 국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주식에 대한 거래 시 적용되며, 증권거래세율은 최근에 변동된 바 없음
    -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거래가액의 0.3%
    - 회사채, 금융채 및 정부가 비준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거래가액의 0.1%

26) <http://www.ibfd.org/>

- 대만의 선물거래세는 1998년 이후로 약정금액에 근거하여 거래 양 당사자에게 거래건별로 부과하고 있음
  - 세율은 0.01%보다 낮거나 0.06%보다 높지 않도록 결정함

## 가. 법인 납세자

### 1) 소득세

- 개정 전에 면세소득이었던 주식매매 등에 대한 자본이득을 개정에 따라 과세 소득으로 전환하여, 주식매매 등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 주식매매 등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만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옵션, 선물, 상장·비상장주식 및 그 외의 시장성 있는 주식의 매매로부터 얻은 자본이득을 말함
-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의 50%를 면제하고, 손실은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함

### 2) 소득기본세

-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소득기본세 계산 시에도 해당 자본이득을 고려함
- 소득기본세율의 세율을 인상하고 소득기본세의 면제한도를 축소함
  - 개정 세법도 개정 전과 같이 주식매매 등에 대한 자본이득을 소득기본세를 계산하기 위해 고려하는 범위에 잔존시킴
  - 소득기본세 면제한도를 2백만뉴타이완달러에서 50만뉴타이완달러로 축소함
  - 소득기본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함
-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주식 등의 거래로 인한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기본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함

## 나. 개인 납세자

### 1) 소득세

- 개정 세법에 따르면, 개인은 2013년과 2014년에는 이중보고시스템, 2015년에는 단일시스템을 적용
  - 이중보고시스템에서는 임퓨테이션 기준과 실제 기준을 적용하며, 단일시스템은 실제 기준만을 적용
  
- 이중보고시스템에서 개인은 주식의 매매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하기 위해 두 가지의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 실제 기준은 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15% 혹은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임
    - 납세자가 이 방식을 선택하면 해당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 자본손실은 이월공제되지는 않고 당해 연도에 보고되는 자본이득을 한도로 공제가능함
  - 임퓨테이션 기준은 원천징수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타이완 주식 교환지수 (weighted average index of the Taiwan Stock Exchange, TAIEX)가 8,500포인트 이상이면 주식의 매매가액에 대하여 0.01~0.03%의 범위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임
    - 누진세율은 TAIEX가 8,500포인트 이상이면 0.01%, 9,500포인트를 초과하면, 0.02%, 10,500포인트를 초과하면 0.03%를 적용
    - 이 기준은 2015년부터 폐지될 것임
  
- 다음의 경우에는 임퓨테이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대만의 신흥주식시장에 10만주 이상을 매각한 경우
  - 최초 공모로부터 취득한 1만주 이상을 매각한 경우
  - 2013년 1월 1일 이후에 대만 증권시장에서 회사의 신규상장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 실제 기준만 적용할 수 있는 비거주자인 경우
- 실제 기준을 선택한 개인이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자본이득의 50%가 면제되고, 신규상장 이후에 3년 이상 보유한 신규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자본이득의 75%를 면제함

## 2) 소득기본세

- 개인의 주식 등 매매에 대한 자본이득은 소득기본세의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 2. 일본 개정세법

[조세동향 12-9호]

### 가. 아시아 거점화 촉진세제 신설

- 2012년 8월 3일 일본에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와 아시아 본부를 유치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특정다국적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명 「아시아 거점화 촉진법」)이 공포됨
  - 이 법률의 목적은 일본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과 아시아 본사를 일본에 유치하기 위한 지원조치를 마련하는 것임
    - 그 배경으로 아시아 신흥 국가의 경제성장과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책 강화에 따라 일본 내 다국적 기업이 철수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국제적 사업 활동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점을 들고 있음
  - 이 법률은 인증 받은 다국적 기업이 국내에서 새롭게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과 총괄사업에 대해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총괄사업이란 자회사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의 사업을 의미함
  -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5년간 적용됨

- 세제 지원 조치로서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특례와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특례가 포함됨
  - 인증기업이란 다국적 기업이 의결권 50% 이상을 보유하는 등 다국적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회사 중 2014년 3월 31일까지 인증을 받아 설립된 기업을 의미함
  - 법인세 특례로서 인증기업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 20% 소득공제를 받게 됨
    - 공제 대상 소득은 연구개발사업 또는 총괄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됨
  - 소득세 특례로서 인증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과세시기를 주식 양도 시로 이연함
    - 첫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결의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할 것
    - 둘째, 권리행사가격의 연간 합계액은 1천 2백만엔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셋째, 주당 권리행사가격이 부여계약 체결 시 다국적 기업 주식의 주당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 넷째,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는 금지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것
    - 다섯째,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교부가 부여 결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
    - 여섯째, 임직원은 행사일로부터 행사에 의해 취득한 주식 전체를 보유하지 않게된 날까지 그 주식과 동일한 종목의 취득 또는 양도 상황 등을 인증기업에 매년 보고할 것
  
- 금융지원 조치로서 인증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인증사업계획에 따라 자본금 3억엔을 초과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상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로부터 출자 받을 수 있음
  
- 그 밖에 특허료 경감과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가 포함됨
  - 중소기업에 한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특허료를 경감함
  - 「외환 및 외국무역법」 제27조에 따라 대내 직접 투자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후 30일간 해당 투자가 금지되지만,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금지기간을 2주로 단축함

- 그 외에도 인증기업에 취업 예정인 외국인의 체류자격 심사기간을 1개월에서 10일로 단축함
- 일본 정부는 이 법률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다국적 기업과 일본 중소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함

#### 나. 소비세율 개정

- 2012년 8월 22일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 등을 도모하는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소비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과 「사회보장의 안정재원 확보 등을 도모하는 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지방세법 및 지방교부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됨
- 이들 법률의 도입취지는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형평성이 확보되는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임
- 이들 법률 개정에 따라 소비세율은 현재 5%에서 2014년 4월에 8%로,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될 예정임
- 소비세율 인상조치는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명목 경제성장률 3%, 실질 경제성장률 2%를 목표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부칙에 밝히고 있음
- 또한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인상된 소비세율 시행을 정지할 수 있음을 부칙 조항으로 두고 있음

<표 III-1> 일본 소비세율 인상 계획

(단위: %)

시행 시기	소비세율 (A)	지방소비세율 (B)	최종소비세율 (A+B)
현행	4	1	5
2014년 4월 1일~	6.3	1.7	8
2015년 10월 1일~	7.8	2.2	10

- 한편, 소비세법 개정 법률은 지난 6월 26일 중의원에서 가결된 법안에 포함된 조치들 중 소비세율 인상만을 내용으로 함(중의원 가결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2년 6월호 참조)
  - 종전 법안 중 「소득세법」, 「상속세법」 및 「조세특별조치법」에 대한 개정내용을 삭제하여 8월 10일에 참의원에서 가결된 것임
  - 그 대신 부칙 조항을 추가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 회복을 위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검토, 소득격차 고착화 방지 및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처를 위한 상속세 과세기반 및 세율구조 재검토, 고령자 보유 자산의 젊은 세대로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고 소비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증여세 재검토를 통해 2012년 동안 필요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다. 일본의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과세 특례 시행**

[조세동향 12-10호]

- 일본은 「조세특별조치법」에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과세 특례’를 신설하여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
  - 일본 정부는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함
  - 이를 위해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과세 특례를 통해 화석 연료에서 발생하는 CO<sub>2</sub>의 배출을 억제하고, 그 세수를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화석 연료 청정화·효율화 등의 CO<sub>2</sub> 배출 억제 대책에 활용하도록 함

- ‘지구 온난화 대책을 위한 과세 특례’는 <표 III-2>와 같이 석유석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 석유석탄세 세율은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됨
  - 또한 과세물건별 석유석탄세는 현행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과 추가된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구성됨
    -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세’는 추가된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을 의미함

<표 III-2> 지구 온난화 대책세 단계적 시행에 따른 석유석탄세 세율

과세물건	현행	2012. 10. 1~	2014. 4. 1~	2016. 4. 1~
원유·석유제품	2,040엔/kl	2,290엔/kl (+250엔/kl)	2,540엔/kl (+500엔/kl)	2,800엔/kl (+760엔/kl)
LPG·LNG	1,080엔/t	1,340엔/t (+260엔/t)	1,600엔/t (+520엔/t)	1,860엔/t (+780엔/t)
석탄	700엔/t	920엔/t (+220엔/t)	1,140엔/t (+440엔/t)	1,370엔/t (+670엔/t)

주: ( ) 안은 현행 석유석탄세 세율에 추가되는 부분임

- 또한, 특정 분야나 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분야에 대해 필요한 면세·환급 조치를 마련함
- 현재 석유석탄세 면세·환급 대상인 다음 제품은 현행 석유석탄세 부문과 지구 온난화 대책세 부문 모두에 대해 면세·환급 조치가 적용됨
    - 수입·국산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휘발유 등
    - 수입 특정 석탄
    - 오키나와 발전용 특정 석탄 등
    - 수입·국산 농림어업용 A중유
    - 국산 석유 아스팔트 등

- 한편, 다음 제품은 현재 석유석탄세 면세·환급대상이 아니지만, 지구 온난화 대책세 부분에 대해서만 2014년 3월 31일까지 면세·환급대상으로 함
  - 가성소다 제조업과 관련하여 가성소다 제조용 전력을 자가 발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입석탄
  - 내항 운송용 선박, 일정한 정기 여객항로용 선박에 사용되는 중유와 경유
  - 철도 사업에 사용되는 경유
  - 국내 정기 운송 사업용 항공기에 적재되는 항공기 연료
  - 『이온교환막법』에 의한 소금 제조와 관련하여 소금 생산용 전력을 자가 발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입석탄
  - 농림어업에 사용되는 경유

### 3. 중국의 배당소득세 차등과세 규정

[조세동향 12-11호]

- 중국 정부는 2012년 11월 19일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받은 배당소득을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규정을 발표함(财税[2012] 85号)
  - 기존에는 배당소득 과세표준의 50%(과세표준 경감률)에 20%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실질 세율은 10%로 과세하였음
  - 반면, 새로운 규정은 <표 III-3>과 같이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 경감률을 차등화하여 실질 세율이 5~20%가 되도록 함
    - 이 규정은 상해 또는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또한, 배당소득 지급 시 발행회사가 배당소득의 5%를 원천징수한 후에 주식 처분 시 보유기간에 따라 증권회사가 추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과세방식을 사용함
  - 이러한 배당소득 차등과세 조치는 장기 투자를 유도하여 중국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lt;표 III-3&gt; 중국의 상장주식 개인 배당소득세

(단위: %)

주식 보유기간	과세표준 경감률	배당소득 명목세율	배당소득 실질세율
~ 1개월 미만	0	20	20
1개월 이상 ~ 1년 미만	50		10
1년 이상 ~	75		5

#### 4. 홍콩의 「인지세법」 개정안

[조세동향 12-11호]

- 홍콩 정부는 10월 26일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인지세법(Stamp Duty Ordinance)」 개정안을 발표함
- 단기 보유 주택에 적용되는 특별인지세(Special Stamp Duty) 세율을 <표 III-4>와 같이 인상하고, ‘단기’ 기준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 이 때, 매도자와 매수자는 특별인지세를 연대 납부해야 함
  - 또한, 주택매입자인지세(Buyer's Stamp Duty)를 도입하여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시장가격의 15%를 주택매입자인지세로 과세함
  - 이러한 인지세 개정안은 2012년 10월 27일 이후 취득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될 예정임

&lt;표 III-4&gt; 홍콩 특별인지세 세율 인상안

(단위: %)

주택 보유기간	현행	개정
~ 6개월 미만	15	2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0	15
1년 이상 ~ 2년 미만	5	10
2년 이상 ~ 3년 미만	-	

## 5. 뉴질랜드의 2012년 세율 및 신고 등에 대한 세법

[조세동향 12-11호]

- 뉴질랜드에서는 10월 2일 세율 및 신고 등에 대한 세법개정안(Taxation (Annual Rates, Returns Filing, and Remedial Matters) Bill)이 법률로 확정됨
  -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가. 소득세율 동결

- 2011-12 과세연도에 적용되던 소득세율을 그대로 2012-13 과세연도에도 적용함

<표 III-5> 뉴질랜드 2012-13년 소득세율

(단위: 뉴질랜드달러, %)

구 분		소득세 세율	
개인	과세표준	~ 14,000 이하	10.5
		14,000 초과 ~ 48,000 이하	17.5
		48,000 초과 ~ 70,000 이하	30
		70,000 초과 ~	33
법인 <sup>1)</sup>		28	
수탁자(Trustee) <sup>1)</sup>		33	
비적격 트러스트의 과세대상 분배금 <sup>1)</sup>		45	

주: 1) 단일세율로 과세함

### 나. 신고절차 간소화

- 소득세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
  - ‘IR 3 소득세 신고서’와 ‘개인소득세 요약’ 서식을 웹에 기반한 개인별 소득세 신고서로 통합함
  - 소득세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개인이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및 과거 4년간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개인의 소득이 근로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만 구성되어 일정 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non-filing taxpayers)’로 분류됨
- 이러한 납세자는 종전에 소득세 신고서를 과세연도마다 선택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자의적으로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었음
-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미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과납세액을 환급받음
- 납세자들의 회계기록을 국세청이 승인한 해외 정보저장 업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다. 수익분배계획에 대한 과세

- 수익분배계획(profit distribution plans)에 따라 주주에게 발행된 주식은 다른 배당재투자계획(dividend reinvestment plan)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함
- 수익분배계획은 배당결의 시 주주에게 주식으로 배당받을 것인지 또는 배당받은 주식을 환매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
- 현행 규정은 수익분배계획에 따라 주식이 배당된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보고, 주주가 배당받은 주식을 회사에 환매하기로 선택한 경우 환매대금(현금)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반면, 다른 배당재투자계획에서는 주주가 배당받는 대상이 주식인지 현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 개정법은 수익분배계획에 따라 주식이 배당된 경우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배당재투자계획에 대한 일관된 과세처리가 가능하게 함

#### 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에 대한 과세

- 실패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비용도 개발을 포기한 과세연도에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행정해석이 공제를 불허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법률 규정으로 입법화함

#### 마. 키위세이버 최소 납입금 기준 인상

- 국민연금제도인 키위세이버(KiwiSaver)에 대한 근로자 또는 고용주의 최소 납입금 기준을 근로소득의 2%에서 3%로 인상함
  - 키위세이버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납입금과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운영
  - 종전에 근로자는 세전 근로소득의 2%, 4%, 8% 중 선택하여 키위세이버에 납입할 수 있었으며, 납입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기준(2%)이 적용되었음
    - 또한, 고용주도 지급한 근로소득의 최소 2%만큼 의무적으로 납입 의무가 있었음
  - 최소납입금 인상 조치는 근로자 또는 고용주의 부담분을 높이고 정부 부담분을 낮추는 방식으로, 키위세이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임
    - 이미 2011년에 키위세이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연 1,042.86뉴질랜드달러에서 절반인 연 521.43뉴질랜드달러로 축소되었음

#### 바. 은행 그룹의 자본 기준 강화

- 외국계 은행에 대한 과소자본세제를 강화하여, 뉴질랜드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4%에서 6%로 인상함

##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2년 제2호

---

2012년 12월 24일 인쇄

201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조 원 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1318-71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 2186-2114(대), [www.kipf.re.kr](http://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일지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